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희망찬 농업, 활기찬 농촌, 행복한 국민
농림축산식품부
Ministry of Agriculture, Food and Rural Affairs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afra.go.kr
http://www.motie.go.kr

보도참고자료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산업통상자원부 세계무역기구과 김호철 과장(044-203-5630), 고상미 서기관(5631)
농림축산식품부 농업통상과 김경미 과장(044-201-2051), 이정석 사무관(2052)

정부, WTO에 쌀 양허표 수정안 제출

- 앞으로 WTO 검증절차에 철저히 대응하여 원안대로 관철 노력 -

□ **정부는 2015.1.1일 쌀 관세화 시행을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을 9.30(화) WTO 사무국에 제출하였음**

○ 양허표 수정안에는 쌀 관세율 513%를 비롯하여 수입물량 [illegible] 국내시장 보호를 위한 특별긴급관세(SSG), 저율관세할당(TRQ) 물량 세율 등 지난 9.18(목) 정부가 旣 발표한 내용을 명시하였음

□ WTO 회원국은 우리 쌀 양허표 수정안이 공식 회람된 이후 3개월간 동 양허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, 이의를 제기할 경우 우리나라는 모든 이의가 철회될 때까지 이의제기국과 양자 협의를 진행하게 됨

○ WTO 절차 규정*에 따르면, 양허표 수정안에 대해 회원국들에게 3개월간의 이의제기 기간을 부여해야 하며, **일본·대만**도 관세화 이행 3개월 전에 양허표를 제출**하여 회람한 전례가 있음

* 「관세양허표의 수정 및 정정 절차」(L/4962, 1980.3.26 결정문) 제3항
** (일본)'98.12.21 제출→'99.4.1부터 이행, (대만)'02.9.30 제출→'03.1.1부터 이행

○ 우리가 제출한 양허표 수정안이 원안대로 관철될 수 있도록 정부는 WTO 검증에 철저히 대응하겠음

참 고 쌀 양허표 수정안 내용

□ WTO에 제출한 쌀 양허표 수정안의 내용은 9.18(목) 정부가 발표한 'WTO 통보내용'과 동일함

〈 9.18. 정부 발표 내용 〉

□ 쌀 관세율은 WTO 협정에 근거하여 513%로 결정

○ 국내가격으로는 대표 도매가격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조사 가격을, 국제가격으로는 인접국인 중국의 평균 수입가격을 사용
(기준연도는 WTO 농업협정에 명시된 대로 '86~'88년 적용)

○ 국제 쌀 가격이 관세율 계산 기준연도인 '86~'88년보다 훨씬 높아졌으므로, 상대적으로 보호효과가 큰 종가세를 적용

□ 쌀에 대해 특별긴급관세(SSG)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여, 쌀 수입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하는 경우 관세율을 높여 국내시장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함

□ '14년 의무수입물량인 408,700톤은 관세화 이후에도 현재와 같이 5%의 관세율로 수입을 허용하고, 기존 국별 쿼터물량(205,228톤)은 글로벌 쿼터로 전환

○ 밥쌀용 비중(30%), 국내시장 접근기회 보장 등 관세화 유예기간 동안 적용되었던 저율관세물량의 용도에 관한 규정은 삭제

MOTIE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